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선거관계법령 위반 추가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73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선거관계법령 위반 추가 ...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2025. 10. 29.
3. 회 부 일: 2025. 10.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 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높은 수준의 준법 및 윤리의식을 요구받는 금융회사 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청렴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금융회사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이러한 금융회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공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는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공공성·

신뢰성을 저해하는 임원이 선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임원 결격사유에 특정경제범죄,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더해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

Ⅲ. 검토의견: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선거관계법령 위반 추가

□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¹⁾의 결격사유로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 7. (생략) <u><신설></u>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 ----- . 1. ~ 7. (현행과 같음) 8.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 선거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8. (생략)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u>제8호까지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③ (생략)	<u>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u> <u>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9. (현행과 같음) ② ----- ----- <u>제9호까지의</u> ----- ----- ----- ----- ----- ---. ③ (현행과 같음)

□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공익성, 건전경영 및 신용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미성년자, 파산자 등을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① 금융관계법령 위반과 ② 그 밖의 법령 위반의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정하고 있음.

① 「금융사지배구조법」과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고, ②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음.

- 그 밖에, 금융관계법령 등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음.

<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사유(법 제5조제1항) >

제5조제1항	결격사유
제1호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제3호	<u>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호	<u>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제6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제7호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호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이 선거관계법령 위반(벌금형)은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공공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는

선거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람이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공공성·신뢰성을 저해하는 사람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원 결격사유에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안 발의 배경을 살펴보면, 「농업협동조합법」²⁾에 따라 농

2)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64조제1항이나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제172조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제173조제1항제1호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1호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 중앙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여 채무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
 -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2. 선거일 공고일 현재 제57조제1항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는 농협금융지주의 임원은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³⁾.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의 취지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선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현행법상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법제5조제3호 또는 제4호 해당), 선거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람(금고형)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님.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3)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된 A씨의 경우 「농협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으나, 농협금융지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금융회사이어서 농협금융지주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THE FACT』, 2025. 10. 29., 윤준병 의원, '농협금융지주 임원 결격사유 강화법' 대표발의).

□ 둘째, 개정안은 선거관계법령 위반을 금융관계법령 위반과 동일한 수준의 임원 결격사유(벌금형 이상)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관계법령 위반과 타 법령 위반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은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해당 행위가 금융회사의 업무나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하고 있음.

즉, 금융관계법령 위반은 금융회사 임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금융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보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인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결격사유로 보는 반면, 그 외 일반 형사범 등은 금융회사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아 보다 무거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결격사유로 보고 있어, 위반행위의 성격과 영향력에 따라 규율 강도를 달리하고 있음.

이는 금융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회사 임원에게 일반 범죄보다 엄격한 준법 의무를 요구하려는 취지임.

○ 그러나 선거관계법령 위반은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 범죄로, 금융회사 업무와의 직접적 관련성이나, 금융회사 임원의 직무인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 등과의 실질적 연관성이 낮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금융관계법령 위반과 동일하게 ‘벌금형 이상’을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현행 결격사유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 셋째, 「금융사 지배구조법」과 달리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위탁선거법」 등 선거관계법령 위반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
하고 있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의 임원 선임 구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선거를 통해 조합장 및 중앙회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해당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
회에 위탁하도록 하며⁴⁾, 이에 대해서는 「위탁선거법」이 적용되
며, 「위탁선거법」 위반을 「농협협동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
로 정하고 있음.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자는 임원 선출을 위
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조합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
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상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조합 선거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도 부합함.

○ 그러나 금융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하는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임원에게까지 선거관계법령 위반을

4)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 제51조제4항, 제130조

결격사유로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제도의 도입 배경과 규율 목적의 차이를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선거관계법령 위반 중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 금고 이상 형을 요건으로 한 일반 결격 규정으로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한 점,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 체계가 직무 관련성과 금융질서 훼손 위험도에 따라 규율 강도를 차등화하고 있는 점, 농협 등 조합 구조와 일반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규율 구조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선거관계법령 위반을 금융관계법령 위반과 같은 수준의 결격사유(벌금형 이상)로 규정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계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위반보다 더 엄격하게 금융회사 임원 자격요건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4